



북경 둔황허광 정보기술 유한공사 VS 팡위(FANGYU) 상업 비밀침해 분쟁 사건

32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9) 高民终字 第5380号
판결 일자	2010년 2월 21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북경 둔황 허광 정보기술 유한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팡위(FANGYU)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부정당경쟁 민사사건 심리에 있어서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제14조		
영업비밀	경영정보 (동영상 CD에서 팡위가 진술하는 내용)		
키워드 (Keyword)	상업비밀(商业秘密), 비밀보호조치(保密措施), 발명양도계약(转让发明合同), 경영정보(经营信息), 상업비밀침해(侵犯商业秘密)		

02 사건 개요

북경 둔황 허광 정보기술 유한공사(이하, 둔황공사)는 글로벌 구매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팡위는 2007년 9월 둔황공사의 기술 총감독(CTO)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둔황공사와 팡위는 2007년 9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밀보호 및 발명 양도계약> 을 체결하였다.

팡위는 2009년 10월 사직을 신청하였으며, 11월 사직은 수리되었다. 팡위는 사직 전인 2008년 8월 '튀튀왕'에 둔황공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둔황공사는 팡위가 상업비밀 유출행위를 하는 동영상 CD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상업비밀이 법정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둔황공사가 제출한 증거의 출처와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둔황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둔황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게 되었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동영상 CD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상업비밀을 12항목으로 명확히 하였다.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였다.

해당 상업비밀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둔황공사의 정보는 공개되어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것이므로 비밀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04 판결 요지

최고인민법원의 <부정당경쟁 민사사건 심리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제14조에서, 『당사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때, 상업비밀은 법정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정보와 상업비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둔황공사도 위와 같은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황공사는 자신의 경영정보의 내용과 범위, 비밀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팡위가 유출한 내용이 상업비밀이라고만 대략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1심법원이 둔황공사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05 Key Point

한국, 중국 모두 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① 상업비밀이 법정조건에 부합한다는 점, ② 상대방의 정보와 자신의 상업비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③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 ④ 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 책임이 있다.

본 사건에서 둔황공사는, 팡위가 모르는 상황에서 팡위와 본 사건 이외 제3자와 대화한 동영상 CD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중국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설에 『동영상 자료가 녹화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꼭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팡위가 모르는 상황에서 녹화되었지만, 팡위가 제3자와 관련 업무를 협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한국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